

2014년 동춘3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 감사 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4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4. 10. 20. ~ 10. 23. [4일간]

☐ **감사범위** : 2012. 09.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II 감사 결과

1 총괄

☐ 감사처분 내역

- 행정상 조치 총07건
 - 주의 총 05건
 - 시정 총 02건
- 재정상 조치 총08건
 - 환수 9천 원/2건
 - 환부 27천 원/6건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7건	8건	
1	예산·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	"	회계처리절차 부적정	주의		
3	주민등록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시정	환부(2,000원/1건)	
4	"	자동인증기 수입 납부 지연	주의		
5	"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	주의		
6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부적정	시정	환수(9,000원/2건) 환부(25,000원/5건)	
7	"	반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주의		

- 이번 동춘3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2, 주의5), 재정상 조치(환부 27,000원/6건, 환수 9,000원/2건)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 회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 직원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 예술·체육활동유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 직원을 위한 상품권 구입, 타 주민센터 부녀회 격려, 자생단체 및 자원 봉사자 격려를 위한 명절선물 구입, 관내 아파트 기념행사용 축하화분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2	예산 회계	회계처리절차 부적정
----------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후 (품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원인행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 지출 후 많게는 27일 이후에 지출품의 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3	주민등록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	-------------	--------------------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할 수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 납부시 100분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에 대해 50% 감경을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부 】

4

주민등록

자동인증기 수입 납부 지연

- 연수구수입증지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 및 연수구자동인증기 사용업무 처리지침의 수입금 정산(수입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계기사용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제증명 자동인증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3회에 걸쳐 1~3일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5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등록기준지가 확인되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개개인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와 담당·주무가 직접 소인하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수기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2012. 9. 1일부터 2014. 9. 30일까지 모든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 주무가 직접 소인을 하지 아니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소인을 날인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 할 때에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6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용모변경 및 성명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 등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1월 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위·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에 따른 재발급처리지침(민원지적과-14707, 2006.11.01)」에 따라 기존증을 소지한 자가 개선된 증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4호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아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외 4명에 대하여 성명변경, 주소변경란 부족 및 보안기능 추가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수수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분실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한 ○○○외 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수료 5,000원을 받고 인증기 사용착오로 증지금액을 300원으로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환부 】

7 일반행정

반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며, 통·반장은 통장이 위촉한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 또한 동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통·반장은 적십자회비 면제 및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 일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3동 주민센터에서는 ◇◇◇외 3명에 대하여 전출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반에 거주하지 않는 반장 자격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해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출이후 1~2회 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1.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 1 ~ 2014. 12. 31
- 사업대상 : 관내 독거노인 중 사업 참여 희망자 12명
- 사업내용
 - 안부전화 및 말벗 서비스
 - 가정방문 및 병원 동행 서비스
 - 사회복지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 운영방법
 - 대상자 주소지의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월 2회 안부확인 실시
 - 대상자의 안부전화 불통 또는 욕구 발견 시 사회복지담당자와 연계 후 서비스 지원
 - 분기별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 추진상황

- 사회복지 관련 안내문 제공 - 매 분기 1회
- 매월 2회씩 자원봉사자 전화 및 방문 상담
 - 3월부터 7개월간 168회 활동 후 자원봉사센터 실적 반영 완료

2. 부수지 문화마당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로 지역공동체형성 및 주민자치실현의 기반 마련
- 남녀노소 문화적 소통 극대화

○ 사업기간 : 2014. 8월

○ 사업대상 : 관내 주민 500여명

○ 장 소 : 동춘3동 부수지 공원 야외무대

○ 사 업 비 : 5,800천원 (보조금 3,800천원 / 자부담 2,000천원)

○ 사업내용

- 봉숭아꽃 물들이기 등 체험 및 전시부스 운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공연
- 소규모 아마추어팀의 공연 및 영화상영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2011년도	봉숭아꽃 물들이기 행사, 영화마당	자부담 추진
2012년도	봉숭아꽃 물들이기 행사, 작은음악회, 영화마당	자부담 추진
2013년도	봉숭아꽃 물들이기 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은음악회, 영화마당	보조금(4,000천원) 자부담(1,613천원)
2014년도	봉숭아꽃 물들이기 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은음악회, 영화마당	보조금(3,800천원) 자부담(천원)